

『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'04. 10. 22제정되어 '05. 3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에 의한 후속 조치로 인정시장과 시장상인회의 등록을 위한 준칙이 시달되어
- 「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서 정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·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시장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사항,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「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」를 제정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인정시장의 구역의 범위(안 제10조)
- 나.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(안 제22조)
- 다. 시설현대화시설물 위탁관리(안 제23조)
- 라. 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(안 제25조)
- 마. 임시시장의 개설(안 제36조)

4. 참고사항

- 「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1 및 제2조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조, 제16조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 인정시장과 시장상인회, 그리고 시장현대화사업, 시장정비사업 등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
-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음